교 직 원 보 수 규 정
시 행 세 칙

제정 2023. 2. 10.
개정 2023. 2. 10.

수 암 유 치 원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이 세칙은 수암유치원 유치원 규칙(이하 '규칙'이라 한다)의 위임을 받아 수암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이 규정의 적용은 수암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 한하여 적용하며, 퇴직한 교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조 (적용기간)
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까지를 적용기간으로 하며, 그 이후 기간에는 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4조 (용어의 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'보수'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
2. '봉급'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(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별,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.
3. '수당'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.
4. '보수의 일할계산'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2 장 교직원의 봉급

제5조 (교직원의 봉급)
교직원의 봉급체계는 월급제로 하며, 당해연도의 봉급월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범위에서 유치원의 예산사정, 교직원의 경력 및 능력,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 등을 고려하여 설립자와 교직원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 3 장 교직원의 수당

제6조 (시간외수당)

① 교직원이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원장은 제외한다.
② 교직원이 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없이 시간외 근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7조 (관리업무수당)
유치원은 원장에게 당해연도 봉급월액의 7.8%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업무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 (직급보조비)
유치원은 원장 및 원감에게 다음 각 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원장 : 최대 400,000원
2. 원감 : 최대 250,000원

제9조 (교직수당)
유치원은 교원 중 교육청으로부터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250,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직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 (정액급식비)
유치원은 교직원에게 월 200,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단, 정액급식비는 유치원의 예산사정, 교직원의 경력 및 능력,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될 수 있으며, 과세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 (명절휴가비)
유치원은 교직원에게 봉급월액의 60%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단,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.

제12조 (성과상여금)
유치원은 교직원에게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4 장 보수의 지급

제13조 (보수의 지급)
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.

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, 출장, 항해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 (원천징수 등의 금지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, 특별징수 또는 공제할 수 없다.

1.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(4대보험료 및 사학연금, 원천세 등)
2.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
3. 교직원의 동의를 얻어 급식비를 공제처리 하는 경우

제15조 (보수지급일)

①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25일 지급한다. 단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②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날 또는 그 다음 날 지급한다.

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가 또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 (보수의 계산)

① 교직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, 승진, 전직, 전보, 승급, 감봉,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봉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교원의 봉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(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1일의 근무시간 중 일부에 대하여 지각, 조퇴, 외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시간분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공제하며, 결근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보수일액을 공제한다. 단, 연가 또는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보수를 공제하지 아니한다.

제17조 (휴직기간의 보수 감액)

법령상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보수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휴직사유를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8조 (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)

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정직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1. 교원 :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.

2. 직원 :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.

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감봉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1. 교원 :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.
2. 직원 : 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로 한다.

제19조 (직위해제기간의 보수 감액)

①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1. 교원 : 봉급의 100분의 30을 감하고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(단, 직위해제의 사유가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한다).
2. 직원 : 보수의 100분의 30을 감한다.

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직위해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급의 100분의 60을 감한다.

제 5 장 퇴직급여

제20조 (퇴직급여)

퇴직금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로 한다. 단,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비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6 장 보 칙

제21조(보수책정 시기)

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매년 신학년도 개시 이전에 책정하여야 한다.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및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하고 있는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책정 시기를 맞추어 정한다.

제22조(준용)

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무원보수규정」과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<표1> 교직원의 봉급월액 책정기준

연번	구 분	직 책	지급형태	봉급월액 책정기준
1	교 원	원 장	월급제	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유치원의 예산사정, 교직원의 경력 및 능력,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설립자와 교직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
2	교 원	원 감	월급제	
3	교 원	담 임	월급제	
4	교 원	담 임	월급제	
5	교 원	담 임	월급제	
6	교 원	담 임	월급제	
7	교 원	담 임	월급제	
8	교 원	담 임	월급제	
9	교 원	담 임	월급제	
10	교 원	방과후	월급제	
11	교 원	방과후	월급제	
12	교 원	방과후	월급제	
13	직 원	관리이사	월급제	
14	직 원	사무보조	월급제	
15	직 원	영양사	월급제	
16	직 원	조리원	월급제	
17	직 원	조리보조	월급제	
18	직 원	조리보조	월급제	
19	직 원	운전원	월급제	
20	직 원	운전원	월급제	
21	직 원	방역지원	월급제	
22	직 원	방역지원	월급제	
23	직 원	방역지원	월급제	
24	직 원	교사보조	월급제	

<표2> 교직원의 수당지급기준

구 분	내용	지급기준
교원처우 개선비수당	최저임금 이상, 공무원 보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교원에게 교육청에서 매월 지급	교원 : 교육청 교원 처우개선비 기준에 따름
관리업무수당	원장의 관리업무 수행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유치원에서 매월 지급	원장 : 봉급월액의 7.8% 이하
직급보조비	원장 및 원감 직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유치원에서 매월 지급	원장 : 400,000원 이하 원감 : 250,000원 이하
교직수당	교원 중 교원처우개선비수당을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유치원에서 매월 지급	교원 : 250,000원 이하
정액급식비	교직원의 급식비 보조를 위한 복리후생적수당으로 유치원에서 매월 지급	교직원의 경력 등에 따라 0원 ~ 2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
명절휴가비	구정연휴 및 추석연휴가 속해있는 달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유치원에서 연간 2회 지급	봉급월액의 60%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2회 각 지급하되,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
성과상여금	교직원의 근무평정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, 분기, 학기별로 설립자가 지급하기 결정한 경우 지급	개별 성과에 따라 별도 책정